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5. 6. 3.(화) 11:00 이후(6. 4.(수) 조간) / 배포 : 2025. 6. 2.(월)

자동차등록 이제는 모바일로 한다

- 6월 9부터 클라우드 기반 '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' 운영
- 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 민원서류 발급…"편의성 향상 기대"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, 이하 TS)은 **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'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**(이하 '차세대 시스템')'을 6월 9일(월)부터 운영한다.

○ **차세대 시스템**은 기존의 '자동차365'와 '대국민포털'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**'자동차 365'로 일원화**하고, **클라우드 기반**으로 **새롭게 구축**되어 **서비스 이용 안정성**과 **편의성**을 높였다.

○ 특히 신규,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**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**할 수 있고, **자동차등록증 등 10종*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**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.

*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(갑), 자동차등록원부(을),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,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,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, 건설기계등록증, 건설기계(타워크레인) 등록증,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,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

□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개인 컴퓨터(PC)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**웹 기반으로 전환**되어 **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** '자동차365'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.

○ 또한, 공동인증서 외에도 **간편인증, 휴대폰 본인인증**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, **전자결제 시스템**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**신용카드,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**할 수 있다.

○ 아울러, **전자서식**을 도입해 위임장,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,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**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.**

□ 국토교통부는 TS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정식 운영에 앞서 4월 28일부터 **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**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**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** 노력의 일환으로,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**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**을 두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**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** 국민 **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**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 괄>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	배소명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정창구 (044-201-3860)
<차세대시스템>	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	책임자	처 장	김동욱 (054-459-7490)
		담당자	대 리	장유희 (054-459-7494)

붙임 **차세대 시스템 개선 내용**

(현행) 민원 창구 분리



(차세대) 민원 창구 일원화



PC 화면



모바일 화면

(현행) 종이서류 작성,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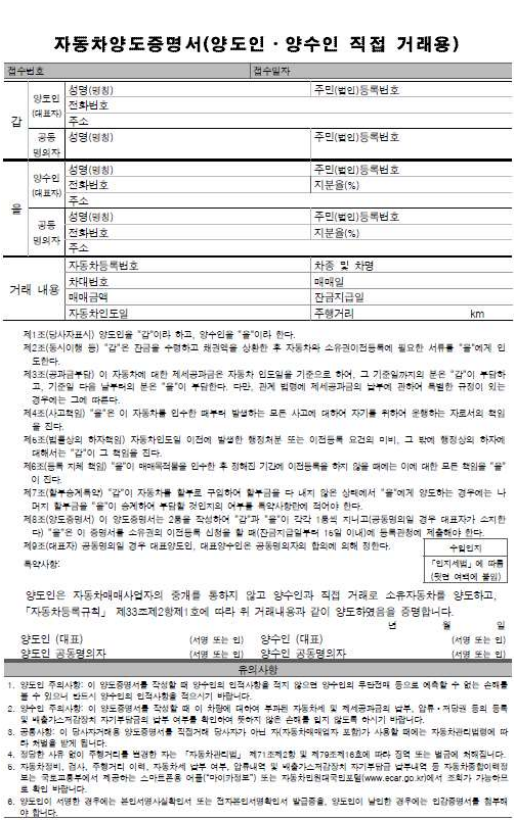

자동차양도증명서(양도인 · 양수인 직접 거래용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갑	양도인(대표자)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
		전화번호	
		주소	
	공동명의자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
을	양수인(대표자)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
		전화번호	지분율(%)
		주소	
	공동명의자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
		전화번호	지분율(%)
		주소	
거래 내용		자동차등록번호	차종 및 차명
		차대번호	매매일
		매매금액	잔금지급일
		자동차인도일	주행거리 km

제1조(당사자표시) 양도인을 "갑"이라 하고, 양수인을 "을"이라 한다.
제2조(동시이행 등) "갑"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"을"에게 인도한다.
제3조(공과금부담)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,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"갑"이 부담하고,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"을"이 부담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제4조(사고책임) "을"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
제5조(법률상의 하자책임)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,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"갑"이 그 책임을 진다.
제6조(등록 지체 책임) "을"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"을"이 진다.
제7조(할부승계특약) "갑"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"을"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"을"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.
제8조(양도증명서)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지니고(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) "을"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(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)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제9조(대표자)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,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.

수입인지
「인지세법」에 따름 (뒷면 여백에 붙임)

특약사항:

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,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(대표) (서명 또는 인) 양수인 (대표) (서명 또는 인)
양도인 공동명의자 (서명 또는 인) 양수인 공동명의자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양도인 주의사항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.
2. 양수인 주의사항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, 압류·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3. 공통사항: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(자동차매매업자 포함)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4.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.
5. 자동차장비, 검사, 주행거리 이력, 자동차세 납부 여부,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("마이카정보")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.
6.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,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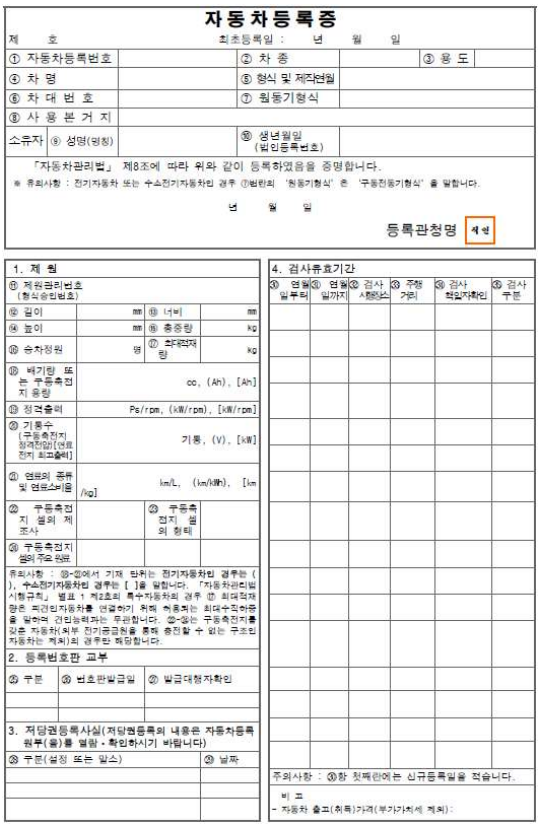

자동차등록증

제 호 최초등록일 : 년 월 일
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	③ 용 도	
④ 차 명		⑤ 형식 및 제작연월			
⑥ 차 대 번 호		⑦ 원동기형식			
⑧ 사 용 본 거 지					
소유자	⑨ 성명(명칭)		⑩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※ 유의사항 :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⑦번란의 '원동기형식'은 '구동전동기형식'을 말합니다.

년 월 일

등록관청명 서명

1. 제 원

⑪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
⑫ 길이	mm	⑬ 너비	mm
⑭ 높이	mm	⑮ 총중량	kg
⑯ 승차정원	명	⑰ 최대적재량	kg
⑱ 배기량 또는 구동축전지 용량	cc, (Ah), [Ah]		
⑲ 정격출력	Ps/rpm, (kW/rpm), [kW/rpm]		
⑳ 기통수 (구동축전지 정격전압)[연료전지 최고출력]	기통, (V), [kW]		
㉑ 연료의 종류 및 연료소비율	km/L, (km/kWh), [km/kg]		
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		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	
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			

유의사항 : ⑱-㉒에서 기재 단위는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( ),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는 [ ]을 말합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. ㉒-㉓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(외부 전기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구조인 자동차는 제외)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
2. 등록번호판 교부

㉕ 구분	㉖ 번호판발급일	㉗ 발급대행자확인

3. 저당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㉘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㉙ 날짜

4. 검사유효기간

㉚ 연월일부터	㉛ 연월일까지	㉜ 검사시행장소	㉝ 주행거리	㉞ 검사책임자확인	㉟ 검사구분

주의사항 : ㉛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
비 고
-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:

(차세대) 전자서식 작성, 전자증명서 발급

